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9
------------	-----

제안연월일 : 2025. 4.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평창 올림픽테마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 필요성

- 평창 올림픽테마파크는 올림픽 성공개최의 유산 계승과 관광객 증대를 위한 복합 시설로서 그에 따른 유·무형적 가치의 보존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관리주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내용 : 평창 올림픽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범위
 - 시설물의 관리 및 기능 유지, 수익시설 운영
 - 그 밖의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사업 운영 등
- 수탁기관 : 평창유산재단(수의계약)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부지면적 $58,835\text{m}^2$ / 건축면적 $4,233.68\text{m}^2$
- 시설내용 : ICT센터(건축물), 기념광장, 기념공원 등
 - ※ ICT센터 :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관 및 사무실, 기획전시실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등



○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ICT센터(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복합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디지털아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 (전시) 각종 기획전시전 운영,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기념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과 소통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 등
기념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의 추억을 기념하는 기억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스타디움을 모티브로한 화합의 마당, 메모리얼힐, 포토존 및 인도교 등

○ ICT센터(건축물) 세부현황

구 분	면적(m ²)	비 고
전시 체험시설	디지털 전시관 (A관)	861.86
	디지털 전시관 (B관)	369.68
	기획전시실	547.93
부대시설	강의실	120.13
	카페	97.44
	기타(대기실, 안내데스크)	44.36
관리운영 시설	관리사무실	93.60
	기타(방재실, 창고, 용역휴게실)	119.31
공 용	설비전기실	275.66
	기타(홀, 복도 등)	1,703.71 필로티 (569.81 m ²) 포함
합 계 (건축 연면적)	4,233.68	

마. 민간 위탁기간

- 2025. 7월 ~ 2030. 7월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의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1,303백만원 ※ 원가산정분석 용역 시행
 - 2025년 소요예산 : 650백만원(7~12월, 6개월간)
- 산출근거 : 불임1 참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본 시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지속적인 문화 및 관광 요소, 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한 시설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증대와 각종 올림픽 유산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평창유산재단에 관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 해당없음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IOC 올림픽 지식재산 활용(시설, 건물 명칭 등) 승인 진행 중
 - 명칭 변동 가능 : 올림픽테마파크, ICT센터
- ※ IOC 내부 행정에 따른 승인 지연 : '25. 5월중 확정 예정

카. 향후 추진일정

-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체결 및 시설 운영 : 2025. 7월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⑤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 3. 생략
-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생략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2.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국내외 회의, 전시행사 등 MICE산업 육성 지원
3.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교육·홍보사업
4. 평화 테마파크 운영
5. 올림픽 유산과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7.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8. 국가 또는 평창군이 위탁한 사무
9. 그 밖에 평창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1]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 위탁금 산정안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합 계			1,303백만원	관리위탁 원가산정 분석용역 기초
비정규직 인건비	정규직 제외 인건비	매표 및 안내 4명 안전 및 환경관리 9명 (36,000천원 * 13명)	468백만원	
상품권	평창사랑 상품권 (환급)	5,000원권 * 연 10만명	500백만원	제조수수료 (125원/장) ※ 경제과 지원
보험료	사회보험료	4대보험료 (퇴직급여 제외 인건비 * 보험료배부율)	72백만원	
복리 후생비	피복비	춘추/하/동복 (107,000원 * 13명)	2백만원	
수선 유지비	시설물 수리, 수선 등	인건비 * 노무비배분율 (10.78%)	75백만원	
공공 운영비	전기료	계약전력 950kw (평균 5~6백)	72백만원	
기타 경비	기타	인건비 * 기타경비율(6%)	42백만원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 5%	72백만원	

※ 정규직(5명) 포함 인건비 : 691백만원

[붙임2] 평창 올림픽 테마파크 수입안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합 계			807백만원	관리위탁 원가산정 분석용역 기초
관람료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연 100,000명 * 8,000원	800백만원	전원 할인 입장료 (지역주민,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사용료	기획전시실 사용료	연 24회 * 300,000원	7백만원	